

고용보험법 10조 2항 입법 개정
투쟁주년 경과보고

2023.7.21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촉구 연대회의



1.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입법촉구	4
2.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입법촉구 성명서 전문	5
3. 고용보험법 고령자 적용제외 규정의 변천	6
4. 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 운동 취지 및 진행경과	7
5.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요청서	10
6. 연대회의 출범	12
- 출범선언문	
-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 웹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 연대회의 참여단체	17
- 사진으로 보는 출범식	
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20
8. 연대회의 국회 앞 1인시위 릴레이	23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항의전화 릴레이	26
10. 언론보도 기사모음	28



1. 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 입법촉구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단순비교 해 동조 항의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 고용노동부 정책 재검토 촉구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인 고령 노동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예외조항에 따른
연령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측은 정책 재검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명문화 조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조의4에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문화 되어있다.

■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요구 캠페인 전개

노후희망유니온 고용보험법제10조 65세이상 고령취업자(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 제외 조항 삭제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캠페인 전개해 나갈 것이다.

2. 개정 입법촉구 성명서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 제정되어 1995년 7월 시행된 이래 계속하여 적용대상 제외 대상연령이 상향되어 65세 고령취업자(자영업자포함)를 제외하는 현재의 조항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고용보험상 고령자제외규정 변경 내용 별첨1 참조)

고령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둔 입법취지를 보면 고령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 고령자들이 취업할 기회가 없어 혜택 실익이 없는 고용보험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7월 2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 장래 근로희망자는 68.5%, 희망근로 상한 연령은 73세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의 기준에서 65세는 충분히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7.3%)로 진입한 뒤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2%)로 진입하였고, 초고령사회(2025년 예상)를 3년 앞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나라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과 생계·소득 지원제도의 지급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동 조항의 존치 근거로 들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1%(725만 9천명)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38에 불과하다

나아가 공적연금 수령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액이 차감 되고(국민연금법 제63조의2) 33.9%의 고령자(60~79세)들은 공적연금 소득이 없다.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2022년 기준 최대 월 307,500원 밖에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단순비교해 동 조항의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이런 연유로 올해 65세 되는 임미령 씨를 대표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집단 진정인 추가모집인 포함 300여명) 노후희망유니온을 비롯한 노인단체 등의 집회가 이어졌다(표2: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 운동 경과 보고 참조)

이에 우리 노인단체들은 하루속히 고용보험법 10조 2항의 개정(삭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3.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적용제외 조항의 변천

1995.7.1	●	제 8조 제1호: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997.1.1	●	제8조 제1호: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998.10.1	●	제8조 제1의 2호:	65세 이상인 자
		제8조 제1호: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보험관계성립일현재 60세 이상인자를 포함한다)
2004.1.1	●	제8조 제1의 2호:	65세 이상인 자
2006.1.1	●	제8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
		제8조 제1의 2호:	삭제
		제8조 본문, 단서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5.11	●	제8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
		제8조 제1의 2호	삭제
		10조 단서	다만, 제1호의 근로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 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6.4	●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
		10조 본문, 단서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제1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019.1.15	●	제 10조 본문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호	삭제
		제10조 제2항	65세이후에 고용(65세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개정촉구
2023. 1 ~	●	제 10조	개정촉구



고용보험법 10조2항 4. 개정 운동 취지 및 진행경과



개정 취지

2022년 7월 26일, 통계청에서 중요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고령층 인구가 1500만 명 돌파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비율로 보면 고령층인구 비율이 10%나 올라 33.4%에 달합니다

세명중 1명이 고령자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연금받는 비율은 50% 채 안됩니다. 49.5%입니다. 게다가 절반도 안되는 이들 연금생활자들의 월평균 연금은 69만원입니다.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절반이 넘고 받는 분들의 하위 50% 고령층들은 3-4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노인들이 당연히 생존을 위해 일하러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OECD가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52%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25.8%)보다 2배가 많았고, 더욱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한국이 34.1%로 단연 1위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어느모로 보나 세계 10위 민주화된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70이 넘어서까지 일해야만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의 이미지가 덜 씩씩져 무능력한 늙은 세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작은 것 같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0조 제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65세 넘으면 받을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조항이 바로 고용보험법 10조 2항입니다.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10조 2항은 고령노동자 연령차별 금지조항에 반하는 명백한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므로 동 조항은 개정또는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진행경과

- 2022.7.19 ● 노후희망유니온 제12차 상집회의에서 임미령 부위원장의 국가인권위 진정서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실업급여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연령차별)를 노후희망유니온의 '집단진정으로 추진 하자' 고 결의
- 2022.07.27 ● 노후희망유니온과 고령자권익센터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및 집단 진정서 제출
- 2022.8.2 ● 제12차 상집위에서 매주 2회(화 목)종로3가 송해길 앞에서 고용보험개정 집회 개최 및 고용 보험법 개정을 위한 가두 서명운동 전개 결의
- 2022.8.16-9.18 ● 제1차-5차 고용보험법개정 집회
- 2022.9.01 ● 가사돌봄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정책협약
● 가사돌봄유니온, 고용보험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서울지방변화사회 인권소위와 간담회 (전정환인권소위원장. 박인숙 변호사 신하나변호사 김국진위원장 전대석사무총장)
- 2022.9.07-9.18 ● 제6차-10차 고용보험법 개정 집회
- 2022.11.04 ● 한국사회법학회, 아주대 SSK사업단,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추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 제도적 과제
제1주제: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 검토
발표: 김태환 교수(국회의정연수원)
토론자: 이흥직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주요 내용: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10조 2항 관련 의안 발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현 재 고용보험법 10조2항은 개정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다' 고 주장
- 2022.11.15 ● 제11차 고용보험법 개정 집회
- 2022.12.22 ● 국회의원 포함 민변 및 노인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 요청
- 2023. 1. 3 ● 제12차 고용보험법 개정 집회

- 고용보험법 10조2항 개정 관련 의원입법 발의 현황
- 2020.7.15. 김성원(국민의힘) 발의 - 10조2항 삭제
 - 2020.12.7. 임이자(국민의힘) 발의 - 10조2항 삭제
 - 2021.1.11. 권명호(국민의힘) 발의 - 65세를 70세로 상향조정

5.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 요청서

1.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의 타당성

1.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들의 노후안전망 시급

- *2022년 통계청 고령층인구 부가조사 결과
 - ▶ 고령층(55세 이상) 인구 1500만 명 돌파
 - ▶ 연금 받는 고령자 비율 49.5%
 - ▶ 월평균 연금수령액 : 69만원. 하위 50%는 30~40만원

2. 일하는 노인 및 생계형 취업의 증가

- *OECD 한눈에 보는 연금보고서
 - ▶ 한국 일하는 노인 비중 34.1%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 ▶ 한국 고령자 소득중 근로 소득 비율 52% (OECD 평균 25.8%의 2배)

3. 부족한 노후안전망이 가져온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 노인이 46.6명(OECD 평균 17.2명의 2배)
- 2021년에도 42.2명으로 여전히 1위
- 노인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 43.4%로 OECD 평균 13.1%보다 3배 높음

4. 양당 모두 법안 발의, 그런데 왜 지연되고 있는가?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 65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을 연금제도와 같은 생계·소득 지원제도의 지급 연령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 동일인에게 기초적인 생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일부 상충될 소지가 있다
-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는 점
- 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취업자들이 대거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과연 맞는가?!

①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는 현재, 65세는 충분히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음. 2000년 고령화사회(7.3%), 2017년 고령사회(14.2%)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등 일본보다 빨리 고령화가 되어가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편에서는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국가들이 실업급여 지급 연령과 생계·소득 지원제도의 지급 연령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훨씬 이른 시기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되고, 다양한 사회보장과 수당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1%(725만 9천명)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나이가 공적연금 수령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노령연금액이 차감된다는 점(국민연금법 제63조의2), 33.9%의 고령자(60~79세)들은 공적연금 소득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2022년 기준 최대 월 307,500원 밖에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 코로나19로 폐업을 했다가 재창업을 한 자영업자, 전업주부로 있다가 재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여성노인, 가사·돌봄서비스에 종사했지만 오랫동안 비공식부문에 머물러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보며 나이를 먹은 가사노동자 등 우리나라에는 처음부터 고용보험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일하는 노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④ 따라서 노후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 가운데에서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는 연령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거나 70세까지 연장하기도 한다. 곧 국가의 상황에 맞춰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6. 연대회의 출범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일하는 노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가량이 노인이다.

이들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한다.

부모 부양이 젊은 세대의 책임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 많은 노인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직 건강하니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등을 이유로 일한다고 한다. 이보다 더 많은 노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를 통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절대다수의 노인들에게는 청소, 경비, 가사·돌봄서비스와 같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계약직이다.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7%에 불과하고, 전업주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무하다.

그런데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한 노인들,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 후 새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 이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런 노인들에게 오직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자 비율은 66%다.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0여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65세 이상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주면 지금도 악화된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노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급여는 많이 받아갈 것이라고.

그동안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그런데 재정 악화가 우리 탓이란 말인가! 간신히 취업한다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인가.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이 우리 탓이란 말인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얼마 전 65세 이상 70세까지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계적 접근도 가능한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만 고집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초고령화 시대, 이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을 갖추고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를 재촉하게 된다.

더 이상 노인을 복지대상자로만 보지 말라. 복지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확실한 빈곤 대책을,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확실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라!

국회에는 여야 정당별 의원들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국회는 즉각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가라! 고용보험법 개정은 우리의 최소한 요구이다.

오늘 출범한 연대회의에 참여한
124개 단체는 노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보험법 개정하라!
일하는 노인에게 고용 안전망 보장하라!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4일
〈고용보험법개정입법촉구연대회의〉 참여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하다!

- 전국에서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는 124개 단체 모여-

“일하는 노인들에게 실업급여 즉각 적용하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11:30-12:00

■ 장소: 국회 앞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개 단체의 연대체이다.

한국사회는 2024년 말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노인빈곤률은 40%가 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평균 30만원을 조금 상회할 뿐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이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을 어떻게 생산활동에 인입하고 보호할지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에 전국의 100여 단체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는 기치를 높이 들고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일하는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방임될 수 없다. 일하는 노인 35%, 취업의사를 가진 노인 55%!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급여와 같은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연대회의 기자회견 식순

□일시: 2023년 4월 4일(화) 11:30-12:00

□ 장소: 국회 앞

□진행 (사회: 정재화, 노후희망유니온 대외협력실장)

1. 인사말

- 김국진(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2. 공동대표 발언

- 이호승(시니어노동조합 위원장)

-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정현모(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회장)

3. 출범선언문 낭독

- 이원택(시니어교육플래너협동조합 사무국장)

- 임미령(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

4. 퍼포먼스

- 기자회견 뒤 일하는 노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차단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웹자보 및 홍보물 제작

■ 핸드파켓 7종 40장(우드락 3T) 420x297mm



■ 플랜카드 디자인 1장 8,000x900mm



■ 폼보드 파켓 4 600x900mm



■ 웹자보 2종



연대회의 참여 단체

노인단체

노후희망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대한노인체육회, 시니어교육플래너 협동조합, 새시대노인회, 50+금융노조연대회의, 참언론시민연합, 사)대한노인복지협회

가사노동자 단체

가사·돌봄유니온, 사단법인 광주노동실업센터,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사회적 협동 조합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주)수원돌봄세상,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창원손길협동조합

자영업자 및 직능단체

한국미용경영자협회, 코리아자영업협회, 한국여성연합, 경무도협회, 한국문화산업진흥회, 한국생기 과학협회, 한국장수축구연합, 한국관광평가협회, 복싱프로모션협회, 마짱코리아, 아로마허브문화, 대리기사 협회, 에덴자연치유원, 통합무술연맹, 체형관리 운동지도자협회, 푸드테크, 우민농산, 한복협회, 다문화연합, 한마음상조, 다산경영협회, 유공자복지연합, 수원정보기술학원, 미래교육연구원, 산모관리사연합, 스마트 에듀케이션, 전통고전헤어협회, 여가문화지도강사협회, SDJ크리에이티브아카데미, 시니어플래너협회 문화예술인협회, 문화교육연합, 색채예술심연구협, 아파트관리소장연합, 평생교육기관연합, 국제예술연맹, 다문화연맹, 국제모델전문가연합, 더퍼스트 파운 데이션, 노인생활체육협회, 다문화직장인축구연맹, 한국 자세체형교정지식협회, 웰글로벌협회, 한글의학지도자연합, 치유숲협회, 메이크업인 연합, 아젤리아드레스 모델협, 연예예술인연합, 디엠정보협회, 선진에프앤씨, 마을신문인협회, 다문화문예사회진흥협회, DMZ 협동조합, 발모제153, 전국찜질방연합, 한국페디큐어협회, 한복모델연합, 중소기업포럼, 스마트에듀 강사협회, 중소기업육성진흥연합, 신문방송인종사자 연합, 스마트워크전문가협회, 척추보링전문가협회, 왕고비경영자연합, 베트남다문화가족연합, 비전유학원, 국악전수자연합, 산모관리원장협회, 다문화BB, 직장인축구연합, 동작미용인협회, 한우리다문화연합 탈북여성자립단체연합 출산보육인협회 체형관리 운동전문가협회 효생활 국민운동협회, 유공자복지연합, 장애인복지연합, 주택건설노동자협회, 미용인 자조연대이주여성인연대, 굿피플협동조합연합 속눈썹미용전문 가협회, 다문화통역프리랜서협회, 역학 역술인연대, 수맥전문가연대, 떡류산업인연합, 국제건강관리사자격협회, 검정고시인연대, 시니어 모델 연합회,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단체

사)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 사)한국장애인가수협회, 사)서울재가장애인협회, 사)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사) 장애인행복사랑소통협의회 중앙회, 사)장애인생명문화협회 서울시협회, 경기도협회, 사)한국방송가수 협회, 경기도북부가수협회,

참관단체

시니어신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진으로 보는 연대회의 출범식



사진으로 보는 연대회의 출범식



접수날짜	2022 년 7 월 27 일	사건번호
국가인권위원회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임미령 외 인	② 생년월일 *1957 . 07 . 20 .	③ 성별*여자
④ 국적*국내		
⑤ 주소*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은천로5가39. 복권아파트 3동 602호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010-7396-2628. wwwpl@hanmail.net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 우편(진정서 주소) ☐ 휴대전화 문자 ☒ 이메일 ☐ 팩스 ※ 휴대전화 문자를 선택한 경우 종결 결과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종결이유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성별*여자
④ 국적*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⑦ 진정인과의 관계*		⑧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② 소속 : 고용노동부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누구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만 65세가 시작되는 날인 7월 20일 발생

② 장소: 삶터사회적협동조합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10조의 연령차별 고령노동자는 억울하다.

저는 1957년 7월 20일생으로 금년 7월 20일 만 65세가 된 여성노동자입니다. 올해 4월부터 구직활동을 통하여 지난 7월 20일 '삶터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10조의 적용 제외 조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65세 이전 취업자와 65세 이후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 10조에 의해 이렇듯 억울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800여 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장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봉양과 자녀교육을 담당하느라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은퇴자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며 노동자로 나서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후 세대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주체들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인생2막을 여는 고령자들의 취업 보장과 함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만 65세를 맞이하는 누구나 취업일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고용보험 10조의 예외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검토와 시정을 통해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을 위해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법 10조 ①항 5번에 의한 차별은 명백한 연령차별이다.

[표 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표1] 고용보험법 10조 ①②는 만 65세 이상인 노동자가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신규취업을 했을 때 고용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는 예외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 커녕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고령자의 취업의지를 확 꺾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일현장에서 동일노동을 할 경우라도 취업 날짜에 따라 고용보험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입니다.

3. 고령화 시대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신은 고령노동자 인권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표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표 2]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함의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시각지대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10조의 예외조항은 고령 취약계층의 또 다른 소외를 양산하는 연령차별이기에 반드시 시정,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 정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표 3]

<고용보험법>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표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조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10조에서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에 있어서의 고령자에 대한 연령 차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10조의 예외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그들의 개인적 자산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대한 정책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 주요한 취약계층인 고령자 고용보험에 대한 연령차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등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근로계약서 1부) ☐ 없음

진정인 임미령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8. 1인 시위 릴레이 (대한국회 정문)



1인 시위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전화 릴레이

항의전화 멘트1

안녕하세요. 000 의원실이죠?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 000인데요.

지금 국회 앞에서 우리 유니온이 1인 시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10조 2항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000의원님도 고용보험법 개정 발의자 이신데 점심 나가는 길에 혹시 말이라도 걸어 보셨나요?

고용보험법 10조 2항은 65세가 넘어 새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니 명백한 나이 차별 아닙니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무리 안건이 많더라도 의원님들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여야가 발의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입법하시고요. 진정으로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거듭나 주세요.

항의전화 멘트2

안녕하세요.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 000인데요. 000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보험법 10조 2항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언제 입법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세계 10대 부자나라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약자가 행복한 나라, 약자가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찌 생각하나요?

나이를 이유로 노인을 차별하니 65세 이상 노동자가 파업이라도 해야 합니까?

서울에 빼곡히 들어찬 건물들 아파트들 거의 노인들이 경비서고 청소 하잖아요. 노인요양 케어, 아동 케어, 가정관리 대부분 60대 노동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손 멈추면 우리나라 돌아갈 거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기왕에 여야가 입법을 발의했으면 시간 끌지 말고 입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산업화 시기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대국 건설했는데 왜 노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부모 모시고 자식 교육 시키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느라 노후준비 못한 노인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안되면 노인들이 나서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합니다

항의전화 멘트3

안녕하십니까. 000의원님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이상의 고령자 노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비원에서부터 청소, 심부름센터, 돌봄서비스, 요양원간병인, 아동 케어, 가정관리사 등 대부분의 단순근로업종에서 힘든일과 굶은일들은 시니어 노동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발의한 개정안이니 만큼 조속히 입법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고령자들에게 고용보험법의 차별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얻고자 하는 정당한 기본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노후희망유니온 150만회원들이 모두 나서서 내년 총선에서 환노위 소속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매일 국회정문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항의전화 멘트4

안녕하세요? 환노위 00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니어교육플래너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원택) 〇〇〇의 000 입니다.

유권자로서, 우리나라 입법을 위해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아가 이미 발의해 환노위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법 10조 2항 개정 조속입법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4월 7일에 국회 앞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법 개정입법 촉구 124개 단체 연대회의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를 위시한 20여 개 신문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국회에 오가며 보고 계시겠지만, 국회 정문에서 매일 일인 그리고 격주 하루 단체 피켓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시대변화에 따라, 저희 연대회의에서 천여 만명 중 상당수가 일하고자 하는 씩씩한 노인들에게 역차별 법이 되어버린

고용노동법 10조 2항목을 바꾸어 주십사하는 작금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에 대응하시는가 했는데...

그간 촉구대회까지 하면서 지켜보니. 정작 여야 입법 발의를 해놓고도, 빨리 개정하라는 저희 촉구 말씀이.

환노위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항상 바쁘다는 이유인지, 이에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의원님들 대신한 환노위 사무관련자의 납득하기 힘든 면피성 변명들인 지는 모르지만...

다시,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법 10조 2항 개정입법 조속 추진바랍니다.

국민 일꾼이라고 해서 뽑아드린 환노위 소속 의원님들이, 특히 노년 일꾼들의 촉구에 마이동풍이라면...

저희는 주인 말을 안듣는 말을 바꿀 수 밖에 없겠다고 합니다.

요새 목빠지게 참다 지쳐가는, 전국 124개 노년단체가, 다음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법 10조 2항을 발의나 해놓고, 구물대면서 뭉개는, 현 국회 환노위 현의원들을 몽땅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또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법 10조 2항 개정입법 조속 추진바랍니다.

해량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0. 언론보도 기사모음

연합뉴스TV

뉴스

제보

뉴스피드

프로그램

보도국

라이프

Q

(이) 라이브

다시보기

사회

"근로 노인에게 실업급여 허용해야"...연대회의 출범

송고시간 2023-04-05 07:24:45

♡ 0



- 동행복권 1076회, "용지뒤틀면" 자세히보니 1등 당첨번호...
- 가상화폐, 무조건 오르는 종목 공개?! "이것" 주목해라!

AD

■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05001500641?input=1825m>

"근로 노인에게 실업급여 허용해야"...연대회의 출범

■ 노동과 희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620>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 노인 실업급여 적용 촉구

■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222>

고용보험법 개정입법촉구 연대회의 “일하는 노인들에게도 실업급여 적용하라”

홈 > 포토 > 사회 > 사회일반

최근 슬라이드 선택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2023/04/04 13:19 송고



■ NEWS1

<https://www.news1.kr/photos/view/?5920583>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04010000765>

"65세이상 노인도 취업하면 고용보험 적용해야"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4>

고용보험법 개정 연대회의' 구성... "나이이유로 고용보험 적용 제한은 차별"

■ 한국노동교육신문

<http://www.noedu.co.kr/001001/2146>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 노인 실업급여 적용 촉구

■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835203>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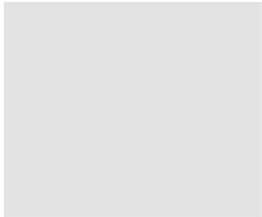
등아일보 | 사회

“일하는 노인에 실업급여 허용하라”... 연대회의,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주애진 기자
입력 2023-04-04 15:50 | 업데이트 2023-04-04 16:39

읽기모드 가

120여 개 단체 모여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공식 출범
초고령사회 앞두고 고령 근로자 사회적 요구 표출 본격화



많이 본 뉴스 베스트 추천 뉴스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04/118677476/1>
“일하는 노인에 실업급여 허용하라” ... 연대회의, 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n 내일신문 뉴스

오피니언 | 내일스페셜 | 자료실

뉴스홀 정치 지방자치 경제 외교/국방/통일 사회 문화 기자별 기사 보기

사회 | 전체 사건/사고 법률 교육 노동 환경 보건복지 시민사회 피플

f yt 지면보기

"일하는 노인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노인빈곤률 40%, 일 원하는 노인 70%... 124개 단체 '고용보험법 개정 연대회의' 출범

2023-04-04 12:00:04 게재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들이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는 대한노인체육회 등 노인단체 10개,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기사노동자단체 13개, 한국미용경영자협회 등 자영업자 및 직능단체 90개 등 전국 124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한국사회는 2024년 말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노인빈곤률은 38.9%이지만 국민연금 수급률(2021년, 보건복지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56562
"일하는 노인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오피니언
[내일신문] 우크라이나전쟁 '사...
한국인치고 사족생(死則生) 생족사(生則死)란 경구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친 이순...

· [홍민기 칼럼] 동행의 양자 70년에 가려진...
· [경제시평] 기후위기의 경제학
· [남재작의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미래의 ...
· [신문로] 제헌의원 조봉암이 제기한 헌법...
· [기고] 미국 독주 막아야 세계경제가 살...

피플
· 최승준 정선군수 '정부가 곤돌라 월가한...
· 권기창 안동시장 '만동-예천 행정통합...
· 미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표현의 자...
· 주상도 한국해상풍력 사업총괄본부장 "...
·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선박평형...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

내일스페셜
· 문턱 높아진 서민금융, 갈 곳 잃은 금융...
· 2019~2022 보험 민원건수 분석
· 탄소중립 실현론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하다

행정신문 | 승인 2023.04.04 20:06 | 댓글 0



전국에서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는 100개 단체 모여

일하는 노인들에게 실업급여 적극 적용하라!"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적극 실시하라!"



최신뉴스

김동근 의정부시장, 녹양지구대 영웅들 격려 방문

고양특례시, 제12회 고양특례시 장배 무에타이대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2022년산 산물벼, 경남 고성군 정부관리양곡창고로 인수 시작

행정신문

<http://www.a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949>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하다



1반

일하는 노인에게 실업급여 적용하라!

4일 오전 국회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기자회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0:41]



많이 본 기사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운전자에 벌칙 등 고지 의무화
- 네이버·쿠팡 '착종 방치' 연대책임 묻는다
- 지역 연계 한국판 챗GPT 띄워볼까
- 가림막 조작 없이...특수교육현장 '신변처리' 취약
- 간호사 국시도 컴퓨터로... '난이도 선택' CAT 부상

HOME > 리포트 > 산업/노동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과 고령자 차별하는 고용보험법

呂 강한남 기자 | 승인 2023.04.04 18:30 | 수정 2023.04.04 18:30 | 댓글 0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 온전히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과 고령자 차별하는 고용보험법

인기기사

- 1 2024년 최저임금 결론 못 내 18일로-노사 ...
- 2 최저임금 상한선 '9,820원~1만 150원' 공...
- 3 [속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 4 7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 5 [위클리] 7월 2주
- 6 공무원보수위 25일 마무리 유력-노조, "파행...
- 7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 살림 지키려는 투쟁"
- 8 잇단 지적에도 계속되는 부실시공
- 9 "무엇이 진로 차질이고 의료 공백인가, 누가 ...

현장 | 경제 | ZOOM IN | 물가-장바구니 | 연재 | 포토-영상 | 보도자료 | 소상공인 '편판' 현장 | 코로나19 후 상권 | 시장에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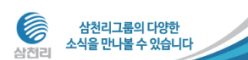
홈 > 시프-현장

[현장] 연대회의의 "일하는 노인에게도 실업급여 적용해야"

차 배나은 기자 | 입력 2023.04.04 18:01 | 수정 2023.04.05 11:17 | 댓글 0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 개정 촉구에 한목소리
연대회의, 일하는 노인 실태조사 즉각 실시 요구



■ 시사Prime

www.sisa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71

연대회의

"일하는 노인에게도

실업급여 적용해야"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③] 전국 124개 단체,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장한형 기자 | 승인 2023.04.06 11:26 | 댓글 0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고용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된 때가 1993년 12월, 법은 이때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재취업이 안 되니, 실업급여도 필요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업급여 등 제도적 보호와 안전장치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를 따라가 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특집연재]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①]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법 개정하라!"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②] 고령노동자권익센터, 고용보험법 국가인권위 진정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③] 전국 124개 단체,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고용보험법 개정 이슈④]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재검토해야"

인기가사

- 1 [역사칼럼] 이기적인 공명심으로 제갈량에...
- 2 "현 노년세대 노후소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콘텐츠는 보셨나요?



"천 노년세대" 촉구도 실행

■ 시니어신문

<http://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00>

전국 124개 단체,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2023 07.20 목요일



≡	뉴스	칼럼	인터뷰	업종별	지역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토크쇼	노동이슈	한국노총 홈	ilo	NEW
---	----	----	-----	-----	----	------	-------	-----	------	--------	-----	-----

티커뉴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뉴스홈 > 뉴스 > 고용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 노인 실업급여 적용 촉구

등록일 2023년04월04일 16시2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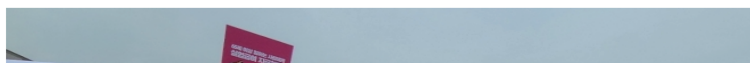
신고하기 + -



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극 모색해야

노인단체들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즐거로운 사회생활

임금채불 / 산업재해 / 성희롱 / 근로계약서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 최저임금

소중한 당신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1566-2020

> 가장 많이 본 뉴스

MORE

- | 종합 | 인터뷰 | 이슈 | 산별 | 칼럼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2 자유주의자 윤석열 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4 한국노총 18만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돌봄 - 5 학교행정실장,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서 - 6 공무원 법제화 필요 | | | | |